

行政大學院과 行政學博士 課程에 대한 構想

趙錫俊

(助教授)

第一章 行政學博士課程設置의 必要性과 目標

서울大學行政大學院이 1959 年에 開校하고 그뒤 2 年後인 1961 年부터 行政學碩士를 輩出하기 始作하여 1969 年 2 月까지에 一部 237 名 二部 44 名 都合 683 名에게 碩士學位를 授與하였다. 其間 行政大學院은 이와 같은 碩士課程의 充實化를 為하여 教授陣의 強化, 藏書의 量的增大와 質的向上, 教授研究活動과 政府에 대한 諮問活動의 擴大, 教授方法의 變化, 入學試驗, 各 課目成績評點에 關한 強制配分制度의 採擇, 碩士論文提出資格考試制의 採擇, 教科要目的 不斷한 修正, 碩士課程取得學點의 大幅의增加等의 措置를 取하여 왔다.

以上과 같은 많은 努力의 結果로 行政大學院은 이제 그의 碩士課程에 關한 限 優秀한 大學卒業生들을 入學시키고 또 先進諸國에 내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行政學碩士들을 輩出하게 되었고, 우리의 이런 努力은 앞으로도 繼繼될 것이다.

勿論 이들 行政學碩士中에서 二部出身은 大部分 現職公務員이고 卒業後에는 自己의 經歷을 繼繼하게 되며, 또 一部卒業生의 경우에도 大部分은 學校의 方針에 따라 公務員生活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中에서는 많은 者들이 學界에 投身하기를 決定하였고, 그리하여 國內他大學의 行政學科의 教授로 在職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自己의 學者的인 素養을 더욱 鞏固히 하기 위하여 卒業後 繼繼하여 學究에 從事하기 위하여 博士課程을 試을 것을 決心하였으나 國내에 先進諸國의 그것과 比肩할수 있는 行政學博士課程이 없음으로 因하여 그동안 1 部出身 21 名과 2 部出身 6 名 都合 27 名이 美國, 英國, 「캐나다」, 「오스트리아」, 「日本」等의 博士課程에 留學하였다. 이들의 大部分은 아직도 學業을 繼繼하고 있지만 그中에는 벌써 博士學位를 받은 者가 8 名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行政大學院出身의 行政學碩士의 質的優秀性을 證明하는 外에도, 이들이 韓國內에 權威있는 行政學博士課程의 缺如때문에 外國에 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意味하며, 또 間接的으로는 이런 留學의 機會를 얻지 못하고 國내에 殘留하고 있는 行政學

碩士中에도 이들에 못지 않게 優秀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權威 있는 博士課程의 國內에서의 開設을 所望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意味한다.

國內에서 이런 行政學博士課程을 履修할 수 있고 또 그學位를 받으며, 그學位는 先進諸國의 그것에 比하여 權威가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優秀한 學者的素養을 가진者들을 더 效果的으로 發掘 啓發하여 國內 學界에 供給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면 國內의 學界에는 얼마나 이런 人材에 關한 需要가 있는 것인가? 이제 1968年度末 現在의 全國各大學의 行政學科의 學年別 定員과 現職專任講師以上의 各級 教授의 實況을 보면 다음 表1과 같다.

<表 1> 全國各大學行政學科現況——1968年末 現在

設置年度	學校名	各學年學生定員	行政學專攻專任講師以上教授現員
1946	서울大法大	80	
1948	釜山大法大	20	2
1955	高麗大法大	50	1
1955	中央大法大	35	2
1958	延世大法政大	60	3
1959	建國大法政大(1部) (2部)	(20) (20)	5
1960	東國大法政大	20	2
1960	漢陽大法政大	20	1
1962	成均館大法政大(1部) (2部)	(20) (20)	2
1962	慶熙大政經大	25	2
1962	國民大(1部) (2部)	(35) (35)	1
1963	原州大	25	4
1963	京畿大(學部) (初大)	(20) (40)	1
1963	大田實業大(初大)	50	1
1963	圓光大(初大)	30	
1964	外國語大	30	
1964	明知大	20	6
1966	檀國大法政大	20	2
1966	友石大法經大	20	1
1968	嶺南大法政大	50	7
	清州大	20	2
計		785	45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各大學中の 行政學科 設置學校數는 21個校이며, 同科의 學年別定員의 計는 785名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다시 4年制課程과 2年制課程(初大)을 감안한 全國行政學科의 全學年 學生定員으로 換算하면 2820名으로 된다. 다음으로 이만한 數의 學生들을 教育하기 위한 教授數는 45名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現行制度下에서 必要한 教授定員은 얼마여야 하는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1063號, 1955, 8, 4, 公布, 大統領令 第3226號—1967, 9, 27, 改正) 第3條는 大學의 教員 配置基準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大學設置基準會 第3條

大學의 教員配置基準은 다음과 같다.

1. 學科當學生定員이 160名以下인 경우에 있어서 2學科까지는 教育法施行令 第53條 第1項에 의 하되 3學科인 때에는 26人以上, 4學科인 때에는 33人以上, 5學科인 때에는 39人以上으로 하고, 5學科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學科마다 5人以上式을 加한다.
2. 學科當 學生定員이 160名을 超過할 때에는 前號에 의한 教員定數外에 그 超過하는 每40人마다 1人式을 加한다.

教育法施行令(大統領 第633號—1952, 4, 23, 來布, 大統領令 第3599號—1968, 9, 25, 改正) 第53條 第1項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教育法施行令 第53條 第1項

大學校, 大學, 師範大學(教育大學除外)과 大學院에 總長, 副總長, 學長, 大學院長과 處長 외에 學科마다 教授와 副教授를 4人以上, 助教授와 專任講師를 5人以上 配置한다. 但, 2學科를 超過 할 때는 前記學科當 人員數量 減할수 있다.

以上 두가지 規程에 依하여 前記諸大學에 必要한 教員定員을 概略的으로 算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以上의 諸大學이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이 混合되어 있는 實情을 감안하여 平均 10個學科 程度를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假定하기로 한다. 그리고 ① 學科當學生定員이 160名以下(따라서 學年定員은 40名以名)인 學校, ② 160名 以上인 學校 ③ 初級大學(二年制)의 三部類의 學校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이 分類에 있어서 1部 2部를 併設한 學校가 兩部를 合하여 學生定員이 學年當 40名以下이면 ①에 그 以上이면 ②의 部類에 歸屬시켰고, 學部初大를 併設한 學校는 初大의 學生數의 半에 該當되는 數와 學部의 學生數를 合한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① 또는 ②의 部類에 所屬시켰다.

①의 部類 即 學生定員 160名以下인 學校數는 14個校, ②의 部類 即 學生定員 160名以下인 學校數는 5個校, ③의 部類 即 初級大學만의 學校數가 2個校이다.

이제 ①의 部類의 學校에는 大學設置基準令 第3條 第1項의 「5學科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學科마다 5人 以上式을 加한다」는 規定에 依하여 $39人 + (5人 \times 5科) = 64人$ 을 必要로 하며 各學科當 平均 6.4人을 所有하여야 한다. 따라서 14個校의 必要한 全體定員은 約

90名이 된다. ②의 部類의 學校에는 大學設置基準令 第3條 第2項의 「前號에 依한 教員定數以外에 그 超過하는 每 40人마다 1人式을 加한다」는 規定에 依하여야 함으로 6.4名에 學年定員 10人이 過超할때마다 교수 1人이 超過해야 하며 5個校에 11名이 超過 配當되어야 한다. 따라서 $6.4\text{人} \times 5\text{校} + 11\text{人} = 43\text{人}$ 이 이 部類의 學校에 必要한 教授人員의 總定員數가 된다. 다음으로 2個의 初級大學은 $\frac{6.4\text{人} \times 2}{2} = 6.4$ 人을 必要로 한다고 할수 있다. 이제 이 세가지의 部類의 學校에 必要한 總教授人員數는 $90\text{人} + 43\text{人} + 6\text{人} = 139\text{人}$ 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不足한 人員은 $139\text{人} - 45\text{人} = 94\text{人}$ 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現在 까지 33%의 教授充員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은 수의 現員가 운데서 行政學博士學位의 所持者는 一部 大學에 있는 2名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의 많은 行政學碩士들이 國內에서의 優秀한 博士課程의 缺如때문에 外國留學의 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음과 또 國內各大學의 行政學科에는 많은 數의 教授要員이 缺乏되어 있음을 보았다.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에 行政學博士課程設置의 必要性은 따라서 明白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直接的으로는 이들 人材나 또는 留學의 機會를 얻지 못한 優秀한 人材들에게 繼繼하여 國내에서 修學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學界에 缺如되어 있는 教授要員의 供給을 時急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必要性에 對한 切感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目標를 設定하게 되었다. 即 行政學博士課程設置의 目標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韓民國의 學界에 從事할 人材들을 供給하기로 한다. 따라서 美國內에서 賦與하는 D.P.A.(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와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中 後者를 指向한 課程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前者は 行政實務에 從事하는 職業人們을 위한 學位인데 對하여 後者は 學者養成을 위한 學位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行政學博士課程은 그 課程의 始作부터 끝까지 內容이나 節次, 學位論文의 水準等에 있어서 先進國의 어느 大學의 學位에 比하여는 遜色이 없는 權威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韓國學界의 水準의 劃期的向上에 도움이 될것이며, 또 이 課程에 關하여 外國留學의 必要性을 學生들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筆者は 以下 內容의 構想에 있어서 本人의 出身大學인 University of Minnesota 뿐만 아니라, 行政大學院을 一般大學院과 別途로 設置한 大學中 Harvard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American University 等의 資料와 後進國 中에서는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the Phillipines의 資料를 參考로 하였다.

셋째 行政學博士學位를 取得한 者는 적어도 두가지 分野 即 行政學과 그 周邊科學에 關한

最近의 知識에 이르기까지 다 完成의 領域에 드러가야 하며 學位取得後에는 他人의 指導 없이 獨自的으로 學界에 貢獻이 되는 研究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を 保有하게 되어야 한다.

넷째 行政學博士課程의 履修中과 學位論文內容에 있어서 韓國의 行政 및 그關聯現象을 主된 焦點으로 하여야 한다. 外國의 學理와 研究方法은 어디까지나 이런 目標에 비추어서 援用되어야 한다.

第二章 行政學博士課程開設을 위한 行政大學院의 準備態勢

現在 서울대학교行政大學院의 教授要員數는 다음과 같다.

教 授 5人

副 教 授 3人

助 教 授 5人

有給助教 5人

無給助教 9人

以上 總 27名의 教授要員이 積士課程 200名의 學生을 教育하고 있음으로 學生數 對 教授要員의 比率은 國內他大學에 比하여 大端히 높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小數의 博士課程學生을 追加敎育하는데 必要한 餘力を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以上의 教授要員中 博士學位所持者를 보면 教授中에서 4人 助教授中에서 3人으로서 計 7名이며, 專任教授 13人에 대한 約 54%에 該當한다. 이를 學位授與大學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University of Minnesota 3人

University of Pittsburgh 1人

서울大學校 3人

이들이 博士學位를 받은 年度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2—1人

1964—1人

1965—1人

1967—1人

1968—3人

그리고 博士學位名을 다음과 같다.

政治學博士(行政學專攻)——3人

哲學博士(行政學專攻)——1人

文學博士(行政學專攻)——1人

行政學博士(行政學 및 經濟學專攻)——2人

以上에 依하여 우리는 教授要員의 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博士學位所持者의 狀況에 있어서는 行政大學院이 博士課程을 開設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看做할 수 있다.

그리고 現在 外國에 留學하여 博士課程을 거치 마치고 있는 本院의 助教들 까지 學位取得後에 將次 實際 講議에 臨할 것을 생각 하여야 한다. 現在 University Pennsylvania에 1人 University of Pittsburgh에 2人, MIT에 1人, University of Hawaii에서 1人이 修學하고 있는 이들이 가까운 將來에 行政學博士課程의 運營에 있어서도 많은 貢獻이 있으리라는 것을 期待할 수 있다.

다음으로 行政學博士課程의 運營에 있어서 不可缺의 要素인 藏書關係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68年末 現在 行政學, 政治學, 社會學, 心理學, 人類學, 經濟學, 數學, 經營學, 統計學, 哲學, 歷史學 等에 關한 西洋書가 8,548 卷, 東洋書가 5,794 卷, 都合 14,342 卷이 行政大學院圖書室에 備置되어 있으며, 서울大學校內에서는 勿論, 亞細亞地域에서도 가장 잘 蒐集되고 방대한 行政學 및 關聯科目에 關한 圖書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圖書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外國學問의 最近狀況을 迅速하게 把握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定期刊行學術雜誌들인 바, 現在 行政大學院圖書室에는 以下와 같은 29種類의 것이 繼續 들어 오고 있다.

<表 II> 行政大學院이 받는 外國定期刊行學術雜誌目錄

1. The Accounting Review
2.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8. Bulleti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9. Business and Government Review
10.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1. Harvard Business Review
12. Harvard Law Review
13. International Organization
14.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15.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1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7. Journal of Politics

18.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19. Municipal Finance
20. National Civic Review
21. National Tax Journal
22. Philli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3. Public Administration
24.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 Public Opinion Quarterly
26. Public Personnel Review
27. The Review of Politics
28. Social Research
29. World Politics

以上과 같은 藏書以外에는 前述한 바와 같은 683 名의 行政學碩士論文은 韓國行政分析에 關한 貴重한 資料로서 保管되어 있고, 또 美國行政學會의 比較行政集團(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의 資料配付處로 指定 받아 많은 이關係의 論文들이 保管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博士課程開設을 위한 圖書關係施設도 國內의 어느 大學에 比하여도 充實할 뿐만 아니라, 外國의 그것에 比하여도 遜色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行政大學院은 同時에 서울大學校의 中央圖書館과 各單科大學의 圖書室을 活用할 수 있는 體制下에 있으므로 이 要素는 더욱 強點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其他 施設에 있어서 電子計算機는 서울大學校가 아직 所有하지 못하고 있으나 將次 이를 導入 하던가 또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와의 姉妹關係設定等에 依하여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第三章 行政學博士課程의 運營節次

1. 入 學

入學志願者의 公式 資格은 國內 또는 外國의 行政學碩學位의 所持者면 될것이나, 前記한 目標에 비추어 本行政大學院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한 者로서, 學界에 進出할 뜻을 갖고, 碩士學位 取得後 數年間 經過하지 않았거나, 繼續하여 研究活動에 從事하던 者를 優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公式資格으로서 年齡의 制限을 두지 않을 것이다, 事實上 是은 世代의 사람이 더 創意的이며 甚한 訓練에 견딜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各級學校의 專任教員이거나 他種類의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者는 公式資格에 있어서도 除外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學生身分以外에 以上과 같은 職業을 갖고 있으면 到底히 本課程을 成功的으로 畢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務員, 軍人, 會社員 各級學校의 專任教員等으로 繼續勤務하면서 修學하고자 하는 者는 除外되어야 한다.

그리고 志願者의 出身學部의 科에 대해서는 行政學의 多學問的接近法의 傾向에 비추어서

반드시 行政學科出身에 限定시키지 말고 그門戶를 開放하여야 된다고 생각 한다.

2. 試 驗

入學試驗은 行政大學院 教授會와 教務課에서 主管하고 一年에 一回 二月中에 實施할 것이며 二學期의 中間入學試驗은 實施하지 않는 것이 學科目 履行節次의 便宜나 本院 碩士課程과의 統一을 為해서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試驗內容은 本院 碩士課程을 履行한 程度의 實力을 試驗하는 것으로 하고, 行政學(組織理論, 人事行政, 財務行政, 政策形成, 發展行政等의 最近傾向), 應用數學, 調查方法, 社會理論, 政治過程, 韓國政府論, 經濟分析等의 諸課目에 行政學을 包含한 5個科目에 關하여 試驗을 實施하는 것이 좋겠다.

3. 定 員

一般的으로 美國의 大學에서는 定員을 制限하지 않고 있으나 本院이 極히 優秀한 學者人材를 養成코자 하는 意圖와 博士課程 新設이 草創的인 事業이라는 理由때문에 定員制를 두고, 一年에 5名以内에 限定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志願者가 5名을 超過하여도 本院側에서 바라는 程度의 現資質과 將來發展性이 缺如된 者가 많으면 實際 合格시키는 人員은 5名보다 훨씬 적을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4. 行政學博士 學位候補 資格

一般的으로 우리나라나 外國에서 다 採擇되고 있는 方針은 博士課程에 入學하여 登錄하였다 하더라도 博士學位候補로서의 資格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方針은 本院에도 같이 適用될 것이다. 이 資格이 賦與되는 時點은 學生이 所定의 學點을 다 成功的으로 取得한 後에 後述하는豫備試驗(Preliminary Examination)에 合格했다는 決定이 있은 後 부터이다.

5. 所要在學年限

入學이 許可된 學生은 學點取得을 위해서 적어도 3年 即 6學期를 學校에서 消費하여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大學에서 一年乃至二年의 Residence Requirement를 要求하는 것 보다 더 長期間을 要한다고 할 수 있다. 3年以内에 所要學點을 全部 履修하지 못하면 다시 더 延長할 수 있으나 入學後 博士學位授與日까지 最長 8年이어야 함으로 이의 制限을 받게 된다. 따라서 論文作成에 2年間 그리고 論文提出後 學位授與日까지의 行政的節次를 半年間 所要되는 것으로 看做한다면 學點取得이 許容될 수 있는 最長期間을 5年程度로 잡는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豫備試驗應試日直前까지의 登錄은 적어도 三回以上 連續되어야지 斷絶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學位取扱과 Field

學點取得을 위한 受講申請以後에 學生은 時間表에 明示된 曆間의 時間に 指定된 教室에서

受講해야 한다. 그리고 登錄한 學期에는 一週四日 以上 學校에 登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學生이 學士·碩士課程에서 本院에서 要求하는 學課目을 履修하지 않았을 때에는 本院 碩士課程에서 그 科目을 履修하여야 한다. 어떤 課目을 이런 不足課目(Deficiency)으로 認定할 것인가는 그學生에 對한 指導委員會에서 決定 한다. 그리고 이런 不足課目에서 履修한 學點은 博士課程만에 必要한 學點數에 通算되지 않는다.

博士課程에 必要한 最少限의 學點數는 40點 程度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學位論文은 學點數의 計算에 算入되지 않는다. 行政大學院의 碩士課程履修에 必要한 學點 36 學點을 合算하면 博士課程 修了를 위해서는 大學院 學點이 全部 76 學點이 必要한 것이 된다. 이것은 美國大學에서 70 學點 內外를 要求하는 憣例에 비추어 오히려 若干 더 많은 數字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博士課程은 이것을 8 個의 Field 로 構想하여 보았다. 이中에서 3 個의 Field 即「行政과 國家發展」, 「調查方法」「行政理論」等은 必需的인 Field이며 나머지 다섯개의 Field 中에서 하나의 Field 를 選擇하여 그學生의 專功分野로 試圖하여 보았다. 이 5 個의 Field는 「行政發展을 위한 組織理論」「行政發展을 위한 人間資源의 啓發」「發展計劃과 財政」「體系分析과 管理科學」「地方政府 및 一級行政」等이다.

Field 間의 選擇, 必需關係를 이와 같이 調節한 理由와 各 Field의 이런 構想에 대한 理由는 教科內容의 節에서 評論하기로 한다.

後述한 教科目編成案에 依하면 必需 3 個 Field 가 15 課目으로서 30 學點이기 때문에 專攻 Field에서 5 課目 10 學點을 따게 된다. 그리고 40 學點 全部를 平均한 成績이 B 以上이라야 다음 節次를 跳을 수 있음은勿論이다.

7. 學生에 對한 指導教授와 指導委員會

學生이 入學하여 登錄을 마치면, 行政大學院院長은 그學生의 志願專攻 Field 를 參酌하여 3 名의 指導委員을 任命하고 이들은 指導教授를 互選한다. 이 指導教授는 學生이豫備試驗을 通過한 後에 任命될 學位論文의 指導教授와 一致할 必要是 없다. 그리고 이 前者の 指導教授는 學生의 Deficiency 課目과 正常的 受講科目, 語學試驗과豫備試驗에 必要한 指導에 臨하고 指導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8. 語學試驗

語學試驗은豫備試驗應試前에 合格해야 한다. 英語以外에 一個外國語를 더 쳐야 하며, 行政學 關係의 外國文獻을 不便 없이 使用할수 있는 能力を Test하는 것을 目標로 하기 때문에 入學試驗當時의 試驗內容에 比하여 그水準이 越等하게 높아야 한다. 語學試驗의 施行과 合格證明書의 發行은 서울大學校의 該當 語學科에서 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一個

科目當解釋과作文能力에 關하여 最少二時間을 筆答에 依하여 test하고 合格點은 100點滿點中 80點以上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二個의 外國語를 同日에 應試할 必要是 없으며, 豫備試點應試日前의 一年半以內에만 合格하면 되나 該當語學科로서는 一學期에 一回에 限하여 그 日時를 大學新聞上에 公告하여 集中的으로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學生은 同一 語學에 關하여 三回만 應試할 機會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9.豫備試驗(Preliminary Examination)

豫備試驗은 一名 綜合試驗(Comprehensive Examination)이라고도 부르며 學生이 所定의 學點을 平均 B以上으로 全部 取得한 後에 自己가 修學한 Field의 全部에 關하여 綜合的으로 試驗을 받는 것을 말한다. 豫備試驗應試의 資格은 이와 같이 所要學點을 平均 B以上으로 取得하고, 二個 外國語에 合格한 사람에게 賦與된다.

豫備試驗의 時期는 이런 資格이 發生한 以後 學位授與日 부터 逆算하여 적어도 2年半前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學期에 一回만 施行한다.

豫備總驗은 三個의 必須 Field와 一個의 專攻 Field別로 모든 受講課目에 關하여 test해야 한다. 筆記試驗의 出題는 各課目的 擔當教授들이 Field別로 委員會를 構成하여, 主로 主觀式問題를 選定하도록 하고, 採擇된 問題의 出題者가 採點하여야 한다.

筆記試驗의 Field當 應試時間은 最少 3時間은 되어야 하며, 一日에 二個 Field式 二日間連續하여 施行한다.

筆記試驗의 合格點은 全科目 80點以上이어야 하고, 그以下の 科目이 하나만 있으면, 筆記試驗에 不合格한 것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不合格한 사람은 同一學期의 口述試驗에 應할 수 있으며, 또 以後 一回에 限하여 다시 豫備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合格通知를 받은 날로 부터 一週以內에 口述試驗에 應試하여야 한다. 口述試驗은 行政大學院院長이 學生이 應試한 Field別로 指名한 委員 4名과 委員長等으로 構成되는 口述試驗委員會가 施行한다. 口述試驗은 最少 3時間 最長 5時間 所要하도록 하여야 한다. 口述試驗委員會는 合格, 不合格을 決定하되 그決定은 滿場一致에 依하여야 한다.

口述試驗委員會에 依하여 合格決定을 받은 者는 豫備試驗을 合格한 것으로 하고, 그 以後에는 入學後 8年까지의 殘餘期間동안 行政學博士學位候補者로서의 資格을 갖게 되며 서울大學校大學院의 博士學位候補者名簿에 記載된다.

10.學位論文(Dissertation)

博士學位候補生이 論文題目을 決定하면 行政大學院院長은 論文指導教授를 指名하며, 後者

는 同學位論文의 完成提出時까지 論文의 指導에 臨한다. 但 指導教授의 不可避한 事情으로 因하여 繼續 指導가 不可能할 때에는 行政大學院長은 지체 없이 他指導教授를 任命하여야 한다.

學生이 提出한 論文의 題目이 不適切한 때에는 行政大學院長은 關係教授와 相議하여 論文 題目的 改題를 要求할 수 있다.

論文을 늦어도 學位授與豫定日이 包含된 學期의 前學期末까지는 提出 되어야 한다.

論文이 提出되면 行政大學院長은 指導教授를 包含한 審查委員 5名을 各者의 傳攻 Field를 參酌하여 任命한다. 5名中 적어도 3名은 行政大學院 助教授以上의 者 가운데서 任命되어야 한다. 審查委員들은 審查委員長을 互選한다.

審查委員들은 論文의 配付를 받은 날로 부터 最短 二個月 最長 三個月 以內에 그 論文을 個別的으로 審查한다.

11. 最終口述試驗(Field Oral Examination)

審查委員長의 通知에 依하여, 行政大學院長은 서울大學校大學院長에게 該當論文에 대한 最終口述試驗을 위한 審查委員會의 召集을 要求하고, 서울大學校大學院은 그日時와 場所를 論文提出者에게 個別 通知함과 同時に 大學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口述試驗은 論文內容에 限해서 主로 創意性, 研究方法의 科學性, 學理上의 貢獻度, 韓國行政發展理論에의 寄與度에 關하여 行해야 하며, 적어도 4時間 以上 所要하여야 한다.

合格決定은 五人の 滿場一致에 依해야 하며 論文이 體制, 内容等의 補完을 要하는 경우에는 이를 不合格으로 해야 한다. 不合格判定을 받은 者는 以後 二回에 限하여 다시 論文을 提出할 수 있으나 博士學位課程에 所要되는 前記 8年을 經過할 수 없다.

合格한 論文에 대해서는 口述試驗日이 包含된 學期의 卒業式에 行政學博士學位(Ph. D in Public Administration)를 授與한다.

12. 서울大學校大學院과 行政大學院과의 關係

美國에서 別途로 行政大學院을 갖고 있는 大學들의 例에 依하면 行政大學院은 博士學位授與에 關하여 一般大學院의 統制下에 있게 된다. 例를 들면 博士學位候補者的 登錄, 最終 口述試驗日의 通知와 公告, 語學試驗日時, 場所 및 施行科의 指定과 施行의 依賴, 入學試驗日의 決定, 學位論文題目과 論文指導教授 및 審查委員의 登錄, 豫備試驗日時 및 場所의 通知와 公告等의 事務를 맡게 된다.

反面에 豫備試驗의 施行, 指導教授와 審查委員의 選定, 入學試驗科目的 決定과 同試驗의 施行, 最終口述試驗의 施行, 教科內容의 編成과 教育, 論文指導等에 있어서는 行政大學院에 委任하고 있다. 서울大學校에 있어서도 現行 規則와 適切히 調節하면서 以上과 같은 方針이

適用되는 것이 行政學教育의 効果나 能率面에 있어서 옳은 方向이라고 생각 된다.

第四章 行政學博士課程의 教科內容

이미 第一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行政學博士課程의 目標가 國內行政學界에 從事할 學者的人材에 載出에 있다면, 最終產出物로서의 人材는 어떤 素養을 具備하여야 하는 것인가?

첫째 그는 外國의 最近 行政理論의 動向에 대해서 完全히 把握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는 이런 外國의 行政理論을 韓國의 特殊條件에 適用 解釋할수 있는 能力を 具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는 獨立한 研究家로서 오늘날의 科學的인 研究, 調查方法에 대한 武器를 具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는 大學에서 行政學中의 特殊分野에 關하여 研究하고 教育하는 能力を 兼備하여야 할 것이다.

教科內容은 이와같은 原則下에서 優先 各 Field 를 構想하여 본 것이다.

Field I 「行政과 國家發展」은 이中에서 둘째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理論的基盤形成의 分野라고도 할 수 있다. 學生은 이 Field 를 通하여 後進國行政에 關聯된 巨視的視野를 社會變動, 政治, 經濟, 코뮤니케이션, 軍隊等과 關聯시켜 啓發시키며, 終局的으로는 政治 및 行政指導者가 어떻게 發展의 問題에 對處하여야하는가를 習得하게 될 것이다.

Field II. 調査方法은 上記의 셋째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것이며, 碩士課程에서의 初步의 研究方法이 아니라, 行政 및 關聯 現象의 深層까지 科學的으로 自己의 個人的 能力에 依하여 探究할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Field에서 學生은 科學的研究方法에 대한 哲學的 理論展開로 부터 始作하여 高級統計學, 나서 細分한 Scaling, 相關分析等의 數量的 調査方法에 대하여 익숙하여 져야 하며, 또 碩士課程에서 履修한 電子計算機理論 위에 理論을 體驗을 通하여 自己의 것으로 만드는 電子計算機實習等을 畢하여야 할 것이다.

Field III. 「行政理論」은 他 Field 나 마찬가지로 行政大學院의 碩士課程을 履修하였다는前提下에 構成된 것임으로 高級 理論이며, 最近의 것에 置重하고, 自己의 傳攻 Field로 移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行政一般, 官僚制, 比較 乃至 發展行政, 政策分析等에 關한 最近理論을 習得하도록 構想하여 보았다.

以上 三個 Field 를 優先 履修한 後에 自己의 傳攻 Field로 移行하게 되는데 적어도 博士課程에 修學中인 모든 學生은 以上 三個 Field에 대하여 다 익숙한 것이 確固한 基盤을 形成하고 그 위에 自己의 傳攻分野를 理解하고 또 自己의 研究를 進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自己의 傳攻 Field 를 갖는다는 것은 이의 넷째 要件을 具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 大學의 事情에 따라서는 必須인 三個 Field 의 講議를 받을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 한다. 傳攻別 Field 인 「行政發展을 위한 組織理論」, 「行政發展을 위한 人間資源의 啓發」, 「發展計劃과 財政」, 「體系分析과 管理科學」, 「地方政府 및 一線行政」에 있어서는 이를 위의 둘째 要件의 具備라는 點을 감안 하면서 Field I 의 知識위에 自己의 傳攻 Field 를 다시 韓國 的與件에 投射하여 適用 解釋하는 能力を 啓發하도록 하였다. 또 行政學一般의 새로운 傾向에 따라 動態的, 多學問의 研究手法에 立脚하여 「再構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設或 Field V 와 Field VII 에 있어서 課目名稱에 傳統的, 制度的인 것이 있어도 이는 그內容에 있어서 위와 같이 再構成 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Field VII 가 그課目數에 있어서 特히 많은 것은 「發展計劃과 財政」은 極히 廣範圍한 分野이기 때문에 學生으로 하여금 다시 이 Field 속에서 特殊分野를 傳攻시키고자 하는 意圖 때문이다. 그리고 Field VII 에는 高等數學의 知識을 具備한 者만이 許容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附錄：行政學博士課程教科內容(試案)

Field I. 行政과 國家發展(Publ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1. 社會變動과 行政(Social Change and Public Administration)
2. 政治發展과 行政(Political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3. 經濟發展과 行政(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4. 코뮤—니케이숀과 國家發展(Communi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5. 軍隊와 國家發展(The Military and National Development)
6. 리—더쉽과 國家發展(Leadership and National Development)

Field II. 調查方法(Renearch Methods)

1. 高級統計(Advanced Statistics)
2. 스케이팅(Scaling)
3. 相關分析(Correlation Analysis)
4. 高級調查方法(Advanced Methods of Inquiry)
5. 電子計算機實習(EDPS Lab)

Field III. 行政理論(Administrative Theory)

1. 高級行政理論(Modern Thoughts on Administration)
2. 現代官僚制理論(Modern Theories of Bureaucracy)
3. 最新比較行政理論(New Trends in Comparative Administration)
4. 政策分析(Policy Analysis)

Field IV. 行政發展을 위한 組織理論(Organization Theories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組織革新理論(Theories of Organizational Change)
2. 發展行政을 위한 決定作成理論(Decision Making Theories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3. 組織內豆류—니 케이션과 情報理論(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4. 機關形成理論(Building New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5. 比較組織理論(Theories of Comparative Organizations)
6. 環境管理(Managing the Environment)

Field V. 行政發展을 위한 人間資源의 啓發(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採用, 試驗, 評價(Personnel Selection, Testing and Evaluation)
2. 分類과 報酬(Personal Classification and Compensation)
3. 人力計劃(Man Power Planning)
4. 公務員의 政治的中立(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ice)
5. 公務員의 社會的背景과 價值, 態度形成(Socialization Process of Civil Servants and Value and Attitude Formation for Public Service)
6. 比較人事行政論(Comparativ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ield VI. 發展計劃과 財政(Development Planning and Finance)

1. 社會經濟計劃과 政治(Politics of Socio-Economic Planning)
2. 物的財政的資源의 動員과 配定過程(Process of Mobilization and Allocation of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3. 豐算과 政治(Politics of Budgeting)
4. 發展과 財政政策(Fiscal Policy for Development)
5. PPBS
6. 프로그램形成과 評價(Program Formulation and Evaluation)
7.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管理(Management of Programs and Projects)
8. 比較財務行政論(Comparative Fiscal Administration)
9. 公企業세미나(Seminar in Public Enterprise)

Field VII. 體系分析과 管理科學(Systems Analysis and Management Science)

1. 線型計劃(Linear Programming)
2. 게임理論과 シミュレーション(Theory of Games and Simulation)
3. 管理決定과 量化決定理論(Quantitative Methods for Management Decisions)
4.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s Research)
5.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6. 體系工學과 設計(Systems Engineering and Design)

Field VIII. 地方政府 및 一線行政(Local Government and Field Administration)

1. 地方政府財政(Local Government Finance)
2. 地方政府人事(Local Government Personnel)
3. 中央, 一線關係論(Central-Field Relationship)
4. 比較地方行政論(Comparativ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5. 地域發展計劃의 作成과 執行(Formulation and Administration of Local Development Plans)
6. 都市化와 都市行政問題(Unurbanization and Municipal Government Function)